



중앙방역대책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 안내(2판, 보건소 외 의료기관용)

1. 관련

- 가. 중앙방역대책본부-427(2020. 2. 7.)호
- 나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7조

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하여 **선별진료소 운영기관(보건소 외 의료기관)에 대한 진단검사비 지원**하고 있습니다.

3. 이에, **진단검사비 지원계획(2판)을 안내**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적용일 : 2020. 2. 7.(금), 소급적용 가능

3. 아울러, 선별진료소 운영기관* 및 검사가능 의료기관(38개)에도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* 선별진료소 현황 :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고

붙임 [2판]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(의료기관 안내용, 보건소 제외). 끝

중앙방역대책본부장



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귀하

주무관	류소연	보건사무관	류시익	총괄팀장	박혜경	상황총괄단장	2020.2.14. 이민원
-----	-----	-------	-----	------	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-599 (2020. 2. 14.) 접수

우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, 질병관리본부 / http://cdc.go.kr

전화번호 043-719-9084 팩스번호 043-719-9099 / rsy9937@korea.kr / 대국민 공개